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4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지도 요청

1. 관련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6항
나.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제 시행 대비 협조 요청[농식품부 검역정책과-602호('17.2.3.)]
다. 2021년 국경검역 추진 대책 보고(알림)[동물검역과-2021호('21.2.23.)]

2. 위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각 지자체 및 축산관련 협회 등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주관기관에서는 정기적(연 4회, 분기별)인 정보의 현행화 및 자진등록 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지도·홍보 등에 대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축의 소유자 등에 고용된 사람(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자진등록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의 소유자 등 고용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지도 시 참고사항

- 자진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 등
- 각 지자체에서 관할 지역 가축사육업의 폐업 처리 완료 시, 관련 시스템(새울정보시스템)과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의 연계로 인하여 정보 반영 및 축산관계자 제외 처리 가능
- 새울정보시스템 미등록 사육업의 경우, 축협(소), 축평원(돼지)을 통해 폐업 신고 시, 해당 정보가 국경검역관리시스템(BQMS)에 반영되어 축산관계자 제외 처리 가능

붙임 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 1부.
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끝.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계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주무관 **유건우** 수의사무관 **김영숙** 동물검역과장 **백현** 전결 2021. 12. 1.

협조자

시행 동물검역과-9761 (2021. 12. 1.) 접수

우 39660 김천시 혁신8로 177 / <http://www.qia.go.kr>

전화번호 054-912-0424 팩스번호 054-912-0431 / kwyou1983@korea.kr / 비공개(5)